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12·29여객기참사피해구제및
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3조 및 제4조)

- 1)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 2) 의료지원금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

나. 치유�휴직의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안 제8조 및 제9조)

- 1)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면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다. 교육비 지원(안 제10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또는 유치원 원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조언, 지원·추모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1)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유가족단

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재난 및 안전관리·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가족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2)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안 제27조)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주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정하고,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지원 대상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유가족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가족단체)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희생자 추모, 유가족(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 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29여

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

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자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 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치유휠틈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치유휠틈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휠틈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휠틈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휠틈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휠틈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휠틈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휠틈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휠틈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휠틈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치유휠틈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휠틈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휠틈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휠틱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휠틱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치유휠틱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치유휠틱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휠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치유휠틱 변경 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휠틱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주가 치유휠틱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휠틱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나.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

2. 법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29여객기참사 당시 19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12·29여객기참사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2학기 이내의 등록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제13조(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추모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 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원·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추모기념관의 시설·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지원·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

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추모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22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지원·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지원·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제27조(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1. 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

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원·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추모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6월 29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치유�휴직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 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특별 휴업·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 유무([]있음 []없음) _____ ~ _____	
치유�휴직	치유�휴직 신청기간 _____ ~ _____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_____) *(근무 복귀 희망일: _____)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첨부서류	1. 신청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치유�휴직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 휴업·휴직 지원금 수급 이력”란에는 2024년 12월 29일 이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지급한 특별 휴업·휴직 지원금 수급여부 및 수급기간을 적습니다.
-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받은 기간은 치유�휴직 기간에서 뺍니다.
- 치유�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서

- 본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근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치유휴직 통지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치유휴직 신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치유휴직	[] 허용 [] 불허용 (사유:)	
	치유휴직 기간 _____ ~ _____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_____) (근무 복귀 예정일: _____)	
사 업 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 칭	
	소 재 지	
	담 당 자	연락처: , 휴대전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치유휴직 신청 근로자 귀하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유의사항

-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 나.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 다.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 라.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다음의 비용으로 합니다.
 - 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비용
 - 나.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시 예정일 변경신청서
치유희직 [] 기간 연장·단축 신청서
[] 철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치유희직 신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종전 치유희직 신청사항	신청일	_____ (치유희직 통지서 통지일: _____)
	치유희직 기간	_____ ~ _____ (치유희직 개시 예정일: _____)
치유희직 신청 변경사항	[] 치유희직 개시 예정일 변경 - 변경하려는 치유희직 개시 예정일: _____ (변경된 치유희직 기간: _____ ~ _____)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_____)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치유희직 기간 연장 [] 치유희직 기간 단축 - 변경하려는 치유희직 기간: _____ ~ _____ (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 _____) *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	
	[] 치유희직 철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희직 [] 변경 [] 기간 연장 [] 기간 단축 [] 철회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업 주 귀하

첨부서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치유희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희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치유희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희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희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희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희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희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희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희직 기간 개시 예정일

근로자 확인서

1. 본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휴직 []변경 []기간 연장 []기간 단축 []철회 를(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휴직 변경, 치유�휴직 기간 연장·단축 또는 치유�휴직 철회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사업주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① 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② 담당자 성명 -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팩스번호) - 전자우편	
신청내용	③ 치유휴직 근로자 수 명	③-1 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원
	④ 대체인력 채용자 수 명	④-1 대체인력 지급 임금 원
	⑤ 지원 대상 근로자 수(합계) 명	⑤-1 신청액(합계) 원
	※ 대상 근로자별 신청 내역은 뒤쪽에 적습니다.	
	⑥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1부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 사본 1부(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서 등)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의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의 임금, 취업의 장소,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서 등) 1부(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대상 근로자별 신청 내역

⑦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신청 내역

치유휴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체 치유휴직 기간	고용유지비용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지급 금품(원)	고용유지비용 신청액(원)
예시) 손오공	2001.1.1.	010-1234-5678	2025.4.21.~2025.5.20.	2025.5.1. ~ 2025.5.20.		
예시) 홍길동	1981.1.1.	010-2345-6789	2025.5.31.~2025.11.30.	2025.5.31. ~ 2025.5.31.		

* 위 작성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⑧ 고용유지비용(대체인력 지급 임금) 신청 내역

치유휴직자 성명	생년월일	치유휴직 신청일	대체인력 성명	생년월일	고용유지비용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지급 임금(원)	고용유지비용 신청액(원)
예시) 홍길동	1981.1.1.	2025.4.1.	김철수	1951.1.1.	2025.5.1. ~ 2025.5.10.		
예시) 홍길동	1981.1.1.	2025.4.1.	이영희	2011.1.1.	2025.5.11. ~ 2025.5.31.		

*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 본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 첨부서류(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등)를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거짓(허위 신청 및 과다 신청 등)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을 하거나 해당 금품을 수령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거나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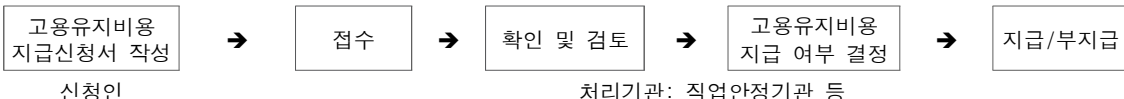
- ①칸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②칸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 ③칸 및 ③-1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 수와 치유휴직 기간에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적습니다.
- ④칸 및 ④-1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체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을 적습니다.
- ⑤칸에는 ③과 ④의 합계, ⑤-1칸에는 ③-1과 ④-1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 ⑥칸에는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 및 대체인력 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로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의 계좌를 적습니다.
- ⑦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별 치유휴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번 신청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비용(치유휴직자 지급 금품)을 적습니다.
- ⑧칸에는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의 근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번 신청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고용유지비용(대체인력 지급 임금)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처리절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연 락 처	(044) 201 - 5456